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◇◇◇

토지소유권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00㎡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00m²(다음부터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함)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◉◉◉가 사정 받은 소외 망 ◉◉◉의 소유의 토지였는데, 소외 망 ◉◉◉는 19○○. ○. ○. 사망하여 소외 망 ◉◉◉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 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●●●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●●●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기본증명서(망 ●●●)
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
1. 갑 제2호증

가족관계증명서(망 ●●●)
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)

1. 갑 제3호증

토지대장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소멸시효 * 아래(1)참조 기 간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 용 불복절차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•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 기 타	 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•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,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,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.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「○○리 이○」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「○○리 이○○」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「이○○」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,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본 사례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99다34390 판결). •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, 다른 일방에 대한 분인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・적절한 수단이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(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다25449 판결). •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을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,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한 필지의 임야가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,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,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4794 판결).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국 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(법무부)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함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

수 있음.
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국가의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